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 정정당당 성과보수 증권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

□ **정정 사유** : ①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 중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투자한도 변경
(10%초과 가능 → **20%이하**)

②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20. 3. 18.

□ **정정 내용**

구분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요약정보			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19. 11. 30 기준</u>	<u>2020. 2. 29 기준</u>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 연혁	평가액 투자한도 변경	<u>10% 초과</u>	<u>20% 이하</u>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19. 11. 30 기준</u>	<u>2020. 2. 29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 투자기구에 관한 사 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19. 11. 30 기준</u>	<u>2020. 2. 29 기준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모투자신탁의 파생상품 투 투자대상 가. 투자 대상 [이 투자신탁이 투 자하는 모투자신탁 의 주요 투자 대상]	파생상품 투 5)파생상품 매매에 따르는 자한도 변경 및 전자증권법 위험평가액 :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늘	<u>10% 초과 가</u> 6)집합투자증권 : 법 제 1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 권	5)파생상품 매매에 따르는위 험평가액 : <u>20% 이하</u> 6)집합투자증권 : 법 제 1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 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(금 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<u>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</u> <u>이하 같다</u>)